



품질인증기관 지정서

1. 지정번호: 제 호

2. 기관명:

3. 소재지: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